

● 회원사 및 유관기관 동정

● 과 장

△기획 송재호

△예산 윤용진

△홍보협력 이문수

△총무 김상만

△재무 박홍우

과학기술부

방사선관련 구 면허증 갱신안내

과학기술부에서는 1962년부터 1993년 사이에 발급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및 특수면허, 방사선취급감독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1984년부터 새로운 면허수첩으로 갱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구 면허증 소지자가 면허를 갱신하지 않아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기 위하여는 보수교육 이수사실 확인 등 반드시 면허수첩이 필요함을 알려드리니 조속한 시일 내에 갱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구 면허증 갱신을 통하여 정확한 면허소지자 현황파악이 가능하므로 인력활용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면허증 갱신신청은 원자력법 시행규칙의별지 제50호 서식(P11)과 필요한 구비서류(허가증원본, 경력신청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반명함판사진 1매, 수수료(수입인지 : 2,500원)를 갖추어 과학기술부로 직접신청(우편신청도 가능)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 면허담당자(☎ 02)503-765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한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방사선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이 보다 손쉽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시스템통합 전문업체인 LG-EDS 시스템과 공동으로 인터넷을 통해 국내 1천3백여개 업체의 방사성 물질 유통과 인허가 안전규제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에 나선다고 9월 24일 밝혔다. 이는 80년대 중반이후 각종 산업분야와 의학 농업 연구분야 등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수요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투입 인력은 감소하고 있어 방사성 물질의 유통 등에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

● 회원사 및 유관기관 동정

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업은 방사선 안전규제 정보화전략을 수립, 인허가 업무를 표준화하는 한편 현재 유관기관별로 분산된 방사성물질 정보 등 각종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오는 200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인허가업무 표준화와 자동화 ▲인터넷을 통한 민원안내 및 접수 ▲전자문서를 통한 업무처리 체계구축 ▲방사성물질의 수입 판매 사용 폐기 등 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인트라넷 환경 구축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 안전규제 통합정보망은 이용업체 현황과 인허가 정보를 비롯해 피폭선량 등 다양한 통계자료와 분석자료를 자동으로 집계해 과학기술부와 방사성동위원소협회 원자력환경기술원 등 유관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특히 방사성 동위원소를 취급하는 업체에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선량 추이 등 안전관리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함으로써 작업 종사자 등의 건강과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위원회,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및 IAEA 안전조치 강화체제 대책 심의

정부는 '98. 9.30(수) 재경원 회의실에서 제249차 원자력위원회(위원장 : 李揆成 재경부장관)를 개최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안)}을 심의·의결하고, {IAEA 안전조치 강화체제에 대한 대책}을 심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하여 과학기술부장관(姜昌熙) 및 산업자원부장관(朴泰榮)과 고창순(高昌舜) 방사성동위원소협회 회장, 이창건(李昌健) 국제원자력학회협의회 부회장, 이건재(李健載) 과학기술원 교수 등이 참석하여 심도있는 토의를 했다. 이날 확정된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에 의하면 방사성폐기물관리는 국가책임하에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당해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중·저준위폐기물 관리시설(1단계, 10만 드럼 규모)은 2008년에 완공하고,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1단계, 2천톤 규모)은 2016년까지 완공기로 하였다. 부지의 선정방법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공모하거나 한전이 부지선정후 지자체와 협의하는 방식을 병행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보고된 [IAEA 안전조치강화체제에 대한 대책]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핵비확산을 위한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대외적인 핵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IAEA 안전조치강화체제에 동참하되, IAEA에 대한 보고내용 및 사찰범위 확대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산업정보에 대한 보호책을 강구기로 하였다. <과학기술부 공보실>